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홍성국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4770

발의연월일: 2020. 10. 29.

발 의 자 : 홍성국 · 임종성 · 양기대

양정숙・송재호・이광재

김경만ㆍ허 영ㆍ장경태

민형배 · 조오섭 · 강준현

용혜인 • 박재호 • 문진석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국가인권위원회는 개인이 가지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하여 관계기관등에 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된 이후로 현재까지 수용 여부가 확정된 권고에 대한 수용률은 86% 수준이며, 관계기관 등이 권고를 불수용할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불수용 사실을 언론에 공개하고 있음.

한편, 권고를 수용한 관계기관 등의 경우 권고의 이행이 더 중요하다고 할 것이나, 현행법은 관계기관 등이 이행계획과 미이행 사유를 통지하는 것 외에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확인·점검하는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임.

이에 국가인권위원회가 관계기관 등에 표명한 권고와 의견의 이행

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, 필요한 경우에 확인·점검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25조).

법률 제 호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 중 "내용을"을 "내용, 제5항에 따른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 결과를"로 한다.

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인·점검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5조(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	제25조(정책과 관행의 개선 또는
시정 권고) ① ~ ④ (생 략)	시정 권고) ① ~ ④ (현행과
	같음)
<u> <신 설></u>	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권
	고 또는 의견의 이행실태를 확
	인·점검할 수 있다.
⑤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	<u>⑥</u>
하면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	
권고와 의견 표명 및 제4항에	
따라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등	
의 장이 통지한 <u>내용을</u> 공표할	<u>내용, 제5항에 따</u>
수 있다.	른 이행실태의 확인·점검 결과
	르 <u>핃</u>